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562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8월 31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유어행위의 한자가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와 다르고 회의에 필요한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개인(個人)뿐만이 아닌 단체가 될 수 있으며 일부 용어역시 통일할 필요성이 있음

2. 주요 골자

- 유어행위의 한자를 ‘游漁行爲’로 함(안 제17조제1항제15호 및 제18조제1항)
- “면제”를 “감면”으로 통일함 (안 제20조제2항)
- 내용 중 ‘자’가 개인뿐만 아닌 단체를 의미할 경우 현행대로 함(안 제23조제5항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7조제1항제15호 및 제18조 중 “유어행위(遊魚行爲)”를 “유어행위(遊漁行爲)”로 한다.

안 제20조제2항 중 “면제 받은 자에게”를 “감면 받은 자에게”로, “면제 받은 금액”을 “감면 받은 금액”으로 한다.

안 제23조제5항 중 “사람에게”를 “자에게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7조(금지행위)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(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<u>것에 한한다</u>)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</p> <p>4. ~ 9. (생략)</p> <p>10.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<u>그러하지 아니한다</u>.</p> <p>가. ~ 라. (생략)</p> <p>11. ~ 14. (생략)</p> <p>15. 제18조를 위반한 <u>유어행위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8조(유어행위 금지) ①</p> <p>시장은 한강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와 한강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하여</p>	<p>제17조(금지행위) ① ----- ----- 구역 내----- ----- <u>해서는 안 된다.</u>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것만 해당한다</u> ----- -----</p> <p>4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러지 않다.</u></p> <p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15. ----- <u>유어행위(遊魚行爲)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유어행위 금지) ①</p> <p>----- ----- -----</p>	<p>제17조(금지행위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 ~ 9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0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가. ~ 라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1. ~ 1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5. ----- <u>유어행위(遊漁行爲)</u>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8조(유어행위 금지) ①</p> <p>----- ----- -----</p>

어로,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, 시기, 대상, 지역,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(생략)

③ 시장은 제2항제2호와 제3호의 금지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금지구역에서 해제하여야 하며,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20조(과태료 부과) ① (생략)

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의 이용료 징수를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제 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③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제23조(위원회 운영) ① (생략)

---- 유어행위(遊魚行爲)는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,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지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금지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과태료 부과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면제 받은 자에게-----
면제 받은 금액-----
-----.

③ -----
----- 등은 -----
-----.

제23조(위원회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---- 유어행위(遊漁行爲)는 -----

-----.

② (개정안과 같음)

③ (개정안과 같음)

④ (개정안과 같음)

제20조(과태료 부과) ① (개정안과 같음)

② -----
----- 감면 받은 자에게-----
감면 받은 금액-----
-----.

③ (개정안과 같음)

제23조(위원회 운영) ①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반사항”을 “모든 사항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한강수계내”를 “한강수계 내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강구”를 “마련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의”를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부합되도록”을 “일치하도록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자에 대하여는” “자에게는”으로,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면제”를 “감면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범위에 관하여는”을 “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 범위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 내지 제3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, “감면 등에 관하여”를 “이용료 감면 등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규정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취소하는”을 “취소할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실비수준”을 “실제 비용 수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단체에 대하여”를 “단체에게”로, “범위내”를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한”을 각각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구역내”를 “구역 내”로, “하여서는 아니된다”를 “해서는 안 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것에 한한다”를 “것만 해당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한다”를 “그러지 않는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5호 중 “유어행위”를 “유어행위(遊漁行爲)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유어행위에 대하여”를 “유어행위(遊漁行爲)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시장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,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지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금지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자는 단속전”을 “사람은 단속 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곤란한”을 “어려운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”를 “감면 받은 자에게”로, “면제 받은 금액”을 “감면 받은 금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등에 관하여는”을 “등은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4항 중 “제2항의”를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가격범위 내”를 “가격범위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」”를 “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당하는 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의원”을 “의원(이하 “시의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위원”을 “공무원인 위원”로, “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”를 “그 직위에”로 한다.

제23조제2항제3호 중 “1이상”을 “1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자,”를 “사람,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시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한강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시민의 이용에 필요한 <u>제한사항</u>을 규정함으로써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----- ----- <u>모든 사항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<u>서울특별시</u> 행정관할에 속하는 한강 본류의 수역 및 둔치로 한다.</p>	<p>제2조(적용범위) ----- <u>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한강공원”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공원녹지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<u>한강수계내</u>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둔치를 말한다.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제3조(정의)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<u>한강수계내</u> ----- -----.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서울특별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한강공원의 보전과 시민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<u>강구</u>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서울특별시장의 책무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마련</u> ----- -----.</p>
<p>제8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<u>의한</u> 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여건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.</p>	<p>제8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③ (생략)

제10조(한강공원 백서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11조(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공개)

① (생략)

② 수집정보의 공개는 제10조에 의한 한강공원 백서에 포함하여 발표할 수 있다.

제12조(공원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시설을 제4조에 따른 기본원칙 및 「하천법」 등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제14조(이용료) ① 시장은 공원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③ 제2항의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범위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한강공원 백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공개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따른

-----.

제12조(공원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따른 -----
----- 일치하도록 -----
-----.

제14조(이용료) ① -----

----- 자에게는 -----
----- 범위 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 감면 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 범위는 -----.

다만,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·운영하거나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하는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및 감면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규정된 이용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0조에 따른다.

⑥ (생략)

⑦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한다.

제15조(공원이용 활성화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시 실비수준에 해당하는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.

③ 시장은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·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, 프로그램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----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-----

----- 이용료 감면 등은 -----.

⑤ ----- 따른 -----
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----- 취소할 -----
-----.

제15조(공원이용 활성화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실제 비용 수준-----
-----.

③ -----

----- 범위 -----
-----.

제16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② 시장이 제1항에 의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
③ 제2항에 의한 단체가 한강공원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17조(금지행위)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~ 2. (생략)

3.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(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)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

4. ~ 9. (생략)

10.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가. ~ 라. (생략)

제16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① -----

----- 단체에게 -----

----- 범위 -----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따른 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따른 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금지행위) ① -----

-- 구역 내-----

해서는 안 된다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 것만 해당한다

4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-----

----- 그러지 않다.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11. ~ 14. (생 략)

15. 제18조를 위반한 유어행위

② (생 략)

제18조(유어행위 금지) ① 시장은 한강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와 한강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어로,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, 시기, 대상, 지역,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(생 략)

③ 시장은 제2항제2호와 제3호의 금지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금지구역에서 해제하여야 하며,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④ (생 략)

제19조(금지행위의 단속) ① (생 략)

② 금지행위를 단속하는 자는 단속전에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표식을 내보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이 제17조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장소, 위반행위 등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(별지 제1호서식). 다

11. ~ 14. (현행과 같음)

15. ----- 유어행위(遊漁行爲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유어행위 금지) ①-----

----- 유어행위(遊漁行爲)는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,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지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금지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금지행위의 단속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사람은 단속 전 -----
-----.

③ ----- 따라 -----

-----.

만, 위반자의 도주나 불응 등으로 인
적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
그 사유를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.

제20조(과태료 부과) ① (생략)

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
제14조제2항의 이용료 징수를 면제
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제
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
를 부과한다.

③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등
에 관하여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에 따른다.

제21조(폐기물 처리) ① ~ ③ (생략)

④ 제2항의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
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⑤ 제2항에 의한 폐기물처리 수수료
는 별표 4의 한강공원 쓰레기 규격봉
투 가격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2조(한강시민위원회) ① 시장은 한
강공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
자문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한강
시민위원회」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
를 설치 운영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제16조에 의한 단체와 협력방안

5. (생략)

② ~ ③ (생략)

----- 어려운 -----
-----.

제20조(과태료 부과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----- 감면
받은 자----- 감면

-----.

③ ----- 등
은 -----
-----.

제21조(폐기물 처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2항에 따른 -----
-----.

⑤ ----- 따른 -----

--- 가격범위-----.

제22조(한강시민위원회) ① -----

----- 서울특별시 한강시민
위원회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따른 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(생략)

2. 위촉위원 :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공원환경·생태·자연성 회복·수상·도시계획·경관·문화 등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

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시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⑥ (생략)

제23조(위원회 운영) ① (생략)

② (생략)

1. ~ 2. (생략)

3. 해당 위원회의 경우, 해당 위원회 (분과위원회, 소위원회 포함)의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
③ ~ ④ (생략)

⑤ 회의(분과위원회, 소위원회 포함)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

④ ----- 사람을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의원(이하 “시의원”이라 한다) -----

사람

⑤ 공무원인 위원----- 그 직위에

⑥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위원회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 1 이상 -----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참여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자, 회의에 필요한 사전 자료수집·회의안건 검토, 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⑥ 시장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---- 사람,

-----.

⑥ -----
----- 서울특별시의회-----
-----.